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계획

2020. 1.



목 차

I . 사업추진방향	1
Ⅱ. 시범사업 개요	2
Ⅲ. 시범사업 모델	3
IV. 지자체 공모 및 선정 방안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6
V. 추진체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7
Ⅵ. 교육 및 인센티브	9
(참고) 시범사업 지역 선정원칙	10
[붙임 1]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 사업 신청서(별첨] [붙임 2]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 사업계획서(별첨	•

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계획

I 사업 추진 방향

- □ 사회적경제 정의 및 의의
 - (정의) 구성원 간 협력·연대·자조를 바탕으로 재화·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
 - (의의)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실업·빈곤 등 사회·경제적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 포용적 성장 실현 가능

□ 로드맵



□ 추진목표

-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^{*}을 활용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선도적 사회서비스 제공
 - *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조직(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 등) 신규 조직화 및 연계 협력
-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

□ 추진방향

- 사회적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형성 지원,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·활용
- ①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(컨소시엄) 확대 ② 자원공유를 통한 규모화
- ②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➡ 주민 스스로의 지역공동체 문제해결

표 시범사업 개요

기본 사업 방향

- ◈ 사회적경제조직 간 컨소시엄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
 -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계·보완
 - 사회적경제 특화 新사회서비스 사업 모델 개발
- ◈ 지역공동체 주민참여형 조합을 통해 지역내 돌봄문제 해결

	유형	사업 예시
기존	지역 돌봄	지역사회 통합 돌봄(커뮤니티케어), '다함께 돌봄' 등 범부
	사업 연계	처 사회서비스 주요 사업간 연계 추진
	새로 운	청·중·장년 1人가구, 맞벌이, 암환자 등 사각지대 신규
	사회서비스 개발	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
신규	주민참여형	주민이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공 돌봄
	돌봄조합	사업간 틈새 지원

□ 지역선정 : 공모방식

- 기초 지자체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신청, 복지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
- □ 사업기간 : 시범사업 지역 선정일. ~ '20. 12월
 - * '19년 선정된 지역은 1년차 평가 결과 및 2년차 추진계획 심의를 통하여 재선정, '20년~ 이후 시범지역은 연도 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장 여부 결정
- □ 지자체 시범사업 예산규모 : 7.7억원(국비 기준, 지자체 경상보조)
 -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시범사업(10개 시군구) : 350백만원*
 - * 지자체별 예산액 : 50백만원(국고보조율 70% / 국비 35백만원, 지방비 15백만원)
 -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(2개 시군구, 각 3개소) : 420백만원*
 - * 지자체별 예산액: 300백만원(국고보조율 70% / 국비 210백만원, 지방비 90백만원)
- □ 지역 선정 규모 : 분야별 구분 선정
 - ① 지역 돌봄 사업 연계형 : 5개 지자체(기존 4, 신규 1~2)
 - ② 新사회서비스 개발형: 5개 지자체(기존 3. 신규 1~2)
 - ③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: 2개 지자체(신규 2) * 지자체별 각 3개소
 - *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 선정 규모는 변동 가능

교 시범사업 모델

①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(컨소시엄) 시범사업

- (사업내용)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·협력(컨소시엄)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·확산
 - (컨소시엄 구성)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조직

사회적경제 연계협력(컨소시엄) 구성안

- 컨소시엄 구성: 대표기관(1개) + 구성기관(2개 이상)
 - ◆ 대표기관 : 지역(시군구) 사회적경제 협의조직^{*}
 - * 사회적경제 협의회·네트워크·연대회의,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지역 자활센터 등 중간지원조직
 - ◆ 구성기관 자격 :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자활기업 (자활사업단 포함), 마을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
- (지원내용)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비 지원
 - ◆ 기존 공공 서비스(아이돌봄, 노인돌봄, 장애인 활동지원 등 정형적인 서비스)외 추가 서비스 욕구(주말 돌봄, 야간돌봄, 일상지원, 공간 연계, 서비스질 향상 등)에 대응

2019년 시범지역 사업 (예시)

- ◆ (서울 도봉구) 노인돌봄서비스 주말·휴일 서비스 확장, 요양돌봄 일상지원 강화 등
- ◆ (광주 광산구) 저소득 밀집지역 공적서비스 외 사회적경제 맞춤 서비스 제공
- ◆ (서울 금천구)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지원 확대, 공간 연계를 통한 돌봄 공백 해소
- ◆ (경기 오산시) 함께자람센터 급간식 비즈니스 모델 구축(메뉴 개발, 배송, 브랜드 개발 등)
- ◆ (경기 고양시) 거동불편 노인 암환자 이동지원 및 낙상방지 서비스
- ◆ (경기 광주시) 뇌혈관질환자 Package서비스(운동·재활, 방문요양, 식사, 주거환경개선) 제공
- ◆ (경남 산청군) 농촌지역 1인가구 문제(고독사 등) 해소 사회적경제 해결 모델 구축
- (예산규모) 총 350백만원(국비)
 -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·협력(10개 지자체) : 350백만원
 - * 사회적경제 연대·협력(컨소시엄): 50백만원 × 10개 지자체 × 70%

<2020년 시범사업 모델 유형>

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) 노인통합돌봄(퇴원지원, 주거지원, 요양·돌봄), 2)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(장애인 탈시설 지원 계획에 따라 돌봄·지원 서비스 연계),
	3) 기타(정신질환자 지역정착, 노숙인 자립 등) 지역내 사 회적경제 컨소시엄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
② 아동돌봄 사업 1 연계)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돌봄 사업의 문화·예술·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, 등·하원 지원, 돌봄상담 등 서비스 제공
③ 새로운 서비스 제공 2) 사각지대 및 틈새 신규 서비스 (청·중·장년 1人가구 등서비스 제공 사각 지대, 기존 서비스 체계에서 제공이어려웠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추가 신규 서비스 제공) ※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여수요자 중심 서비스'및 틈새(사각지대) 서비스"를 제공 * 제공자 중심의 번들 서비스(지원금 매칭)가 아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(예시) 저염식 식단이 필요한 암환자, 초고령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노인세대, 최중증장애로 기존 책정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는 추가 서비스 ** 틈새 서비스: 각종 정부 지원 대상 조건에 맞지않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사각지대 수요자에게 서비스 제공 ② 지역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: 지역내 세대·계층 통합,다문화 가정 사회통합 등 소셜 믹스(social mix)를 통한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창출 ※ 주요 대상자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,대상자간 서로 돌봄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노력

※ 유형별 내용은 지역 상황에 따라 적정한 사업내용 개발 가능

2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사업

- (사업내용) 사회서비스 주민 조합을 구성으로 공공 돌봄사업 틈새 지원
 - (조합 구성) 근거리 생활지역 내 **사회서비스 주민 조합 구성***을 통한 돌봄 수요 대응 및 지역내 유휴 인력 일자리 창출
 - * 지역별 수요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기관(사회적경제 지원센터)을 중심으로 조합형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 구성
 - (틈새 서비스) 보육, 노인, 장애인 등 **돌봄 사업의 틈새 지원**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**서비스(이동, 공간, 프로그램) 지원**
 - (네트워크 플랫폼 개발) 복지부에서 **돌봄 수요 매칭 플랫폼** (App 등) 개발 및 지원
 - * 돌봄 수요와 공급의 실시간 연계 및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마련 등(유사 사례: 째깍악어, 카카오택시)



- (예산규모) 총 **420**백만원(국비)
 -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모델* 2개 지자체 : **420백만원**
 - * 주민참여 조합형 조직 신규 조직화 : 300백만원 × 2개 지자체(각 3개 모형) × 70%
 - 돌봄조합 예산 편성기준 : 세부내용 <참고 2>
 -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*
 - * 돌봄 수요공급매칭 네트워크 플랫폼(App,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모델 등) 개발 시범사업 지역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

Ⅳ 지자체 공모·선정 방법

- □ (신청단위) 기초 지자체(자치 시, 군, 구)를 기본 단위로 신청
- □ 사업 신청 및 공모 절차 (1~2월)
 - 공모 실시('20.01.03) : 복지부→기초지자체
 - * 지자체 대상 공모 안내 공문 발송(~1.3),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('20.1.15 예정)
 - 사업계획서 제출 : 기초지자체(시, 도 경유)→복지부
 - 제출서류 : 신청서(붙임1), 사업계획서(붙임2) 각 1부
 - 제출방법 : 전자문서 제출(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)
 - * 단, 신청서 원본(지자체장 직인 날인)은 별도 등기 송부,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제출
 - ① 사회적경제조직 연계·협력(컨소시엄) 시범사업
 - 기존 시범사업 지역 : ~'20.01.17까지
 - 신규 시범사업 지역 : ~'20.02.05까지
 - ②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사업 : ~'20.02.05까지

□ 선정심사 (1~2월말)

- (심사위원회) 복지부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(정부, 학계, 민간전문가 등 5~10인으로 구성)
- (절차) 1차 서류심사 ➡ 2차 발표심사
 - ①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(컨소시엄) 시범사업
 - 기존 지역 재선정 : ~'20.01.23까지 (별도 심사)
 - 신규 지역 선정 : ~'20.02.21까지
 - ②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사업 : $\sim'20.02.21$ 까지
 - * 2차 발표심사 대상지역 별도 통보 (발표자료 추가 준비 필요)

□ 시범사업 지역 선정(2월말)

- 선정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모니터링·평가계획 구체화
- 선정 지자체 워크숍 실시(3월 초) : 복지부(지원단)→기초지자체
 - * 지역 수준에 따라 단계별 사업 실행계획 수립 지원

Ⅴ 추진체계

□ 보건복지부

-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역 선정·평가 등 사업총괄
- 사업운영 지도·점검, 사업 운영실태·사업 시행결과 평가 등
- 국고보조금 총괄 정산(보조금 적정 집행 확인 등)
- 중앙자문단 구성 운영

□ 중앙 지원단(민간 위탁기관)

- (시범사업 지원) 복지부 사업 지원, 지자체 사업운영 모니터링,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등
- (중앙 자문단 운영) 지자체 실행계획서 작성·운영 지원 등 시범사업 지자체 자문 기능
- (돌봄 플랫폼 구축) 범용 돌봄 수용공급 매칭 네트워크 플랫폼(App 등) 개발

□ 기초 지자체

- (전담부서) 지자체 사업 운영 총괄 등
 - 수요 파악 및 지역 선정, 시범사업 추진단(시범사업 유형별) 선정, 유휴자원 발굴, 지역내 돌봄 정책 연계 지원 등
- (지자체 자문단 운영) 사업계획 수립, 지역자원 조사, 효과성평가 연구 및 모니터링 등 수행

□ 사회적경제 시범사업 추진단

- ①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(컨소시엄) 시범사업 지역
- **대표기관** : 사회적경제 협의조직* 1개 기관을 지정
 - * 사회적경제 협의체,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민관협력 중추기관
 -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행 : 서비스 구성 수행기관 매칭
 - 수행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
 - 사업 수행 결과 보고 : 중간 보고('20.7월), 최종 보고('20.12월)

- **구성기관** : 2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* 참여
 - *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자활기업(자활사업단 포함), 마을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
 - 기관별 사회서비스 제공 및 결과 보고

사회적경제 컨소시엄 구성 원칙

- ▷ 2개 이상의 분야별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필수
 - * 예시) 사회적기업 2, 자활기업 1 (○)/ 자활기업 3 (×)
- ▷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시·군·구 전체, 권역(읍면동) 단위로 컨소시엄 구축 가능

②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사업 지역

- **대표기관**: 사회적경제 협의조직* 1개 기관을 지정
 - * 사회적경제 협의체,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민관협력 중추기관
 - 주민조합형 사업단 조직화 지워

(1단계) 주민참여 운영 주체 발굴 및 조직화, 운영조직 설립지원 (2단계) 주민조합 사업운영 지원, 지역 자원연계, 사업안정화 지원 (3단계) 사업 확대 및 비즈니스 모델 확립

- 돌봄 조합 :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근거리 공동생활권 내 공동 주택지역*(아파트 단지) 등 주민 공동체
 - 주민이 직접 조합형 조직(사회적협동조합 등)을 구성하여 공공 돌봄 사업간 틈새 지원
 - 보육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 사업의 틈새 지원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서비스(돌봄, 이동, 공간, 프로그램) 지원

VI 교육 및 인센티브

□ 교육

<1단계 : 공모참여 지역 대상 >

- 지자체 설명회 : 시범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설명회 진행
 - (교육대상 및 시기) 시·군·구 제안 부서 담당 '20. 1. 15(예정)

<2단계: 시범사업 지역 대상>

- 사업지역 교육·컨설팅 : 시범 사업 수행 확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사업 수행 민간기관 대상 컨설팅·교육 실시
 - (교육대상 및 시기) 시범지역 지자체(담당 공무원) 및 사업 주관 기관 '20. 3월~
 - (교육방법) 추후 시범사업 지역 별도 안내
 - * 전문 자문·교육 기관 지정 예정

□ 인센티브

○ '20년 지역복지사업평가 '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' 가점 부여

참고 1

시범사업 지역 선정 원칙

1) 사회적경제 연계협력(컨소시엄) 시범사업 선정기준(안)

평가항목		세부 내용
사업 타당성	사업 필요성	 지역문제 발굴 및 주민 욕구 분석(수요 분석) 지역 지원조사를 통한 공급자원 분석(공급 분석)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가능성 제시
	사업 적정성	 사업의 추진계획의 구체성 (대상 목표화, 구체적 서비스 내용, 목표, 서비스 단가,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제시) 책정 예산 비목 및 산출내역 타당성
사업 실행력	추진체계	 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심 및 이해도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경제 수행 경험 및 사업 이해도 민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능력
	컨소시엄 적절성	• 컨소시엄 기관 간 공동의 미션 및 목표 설정 • 컨소시엄 기관 간 연대 • 협력 성과(편익 분석) • 컨소시엄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명확성
사업 성과	사회적 성과 (공익성)	·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·지역사회 기여도(지역문제 해결 파급 효과 제시)
	경제적 성과 (지속・발전 가능성)	・수익창출을 위한 중단기적 비전 및 목표 제시 ・다른 분야・지역과의 연계성 및 확산가능성 ・컨소시엄 참여 기관의 확대가능성

2)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평가 기준 (안)

평가항목		세부 내용
사업 타당성	사업 필요성	 지역사회 돌봄수요에 대한 수요파악 및 주민 욕구분석(수요 분석) 지역의 유휴자원(인력, 공간) 분석(공급 분석) 지역문제 해결가능성 제시
	사업계획 적정성	 사업의 추진계획의 구체성 (대상 목표화, 구체적 서비스 내용, 목표,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제시) ・책정 예산 비목 및 산출내역 타당성
사업 실행력	주민 참여도	· 주민 공동체 구성원 규모 및 유사 사업 경험 · 자발적 주민참여 및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 ·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
	지자체 의지	·사업에 대한 지차제 관심 및 이해도 ·지역자원 연계 능력
	추진주체 (중간지원조 직)	·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돌봄 관련 공동체 활동 지원 수행 경험 유무, 활동실적 · 주민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계획 수립
	자원(인적, 물적) 활용 가능성	 유휴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가능성(인적자원) 사용가능한 주민공동시설 보유 및 공간 활용의 지속성 (3년 이상) 사업 목적에 맞는 환경 및 시설의 적합성
사업 성과	사회적 성과 (공익성)	·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·지역사회 기여도(지역문제 해결 파급 효과 제시) ·지역 모임들과의 연대를 통한 선순환구조 제시
	경제적 성과 (지속 • 발전 가능성)	· 수익창출을 위한 중단기적 비전 및 목표 제시 · 사업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단계별 전략 제시 · 주민조합형 사업운영기관 설립방안 제시 · 다른 분야 · 지역과의 연계성 및 확산가능성

참고 2 시범사업 예산 편성 원칙

- □ 사회적경제 연계협력(컨소시엄) 사업 예산(국비) : 총 350백만원
 - 지자체 : 50백만원 × 10개 시군구 × 70%

<지자체별 편성 기준>

○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내(자부담 포함) 자율 편성

※ 예산 사용 범위

- (운영비)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홍보비, 회의비, 업무추진비 등 지역내 사회 적경제 기업의 연대 협력을 위한 사업운영비
- (사업비) 정부지원 대상 외(틈새. 사각지대)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

□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 사업 예산(국비) : 총 420백만원

- ☞ 2개 시·군·구 시범사업, 1개 시·군·구 내 3개 조합 운영 기준
- 인건비 (42백만원) : 30백만원 × 2개 시군구 × 70%
- 운영비 (126백만원) : 90백만원 × 2개 시군구 × 70%
- 사업비 (252백만원) : 180백만원 × 2개 시군구 × 70%

<지자체별 편성 기준>

- (인건비) : 30백만원 (국비 21백만원, 지방비 9백만원)
 - 시군구 시범사업 추진단 조합 시범사업 관리 인력(1명) 인건비 지원
 - * 국비 지원 산출내역 : 250천원*12월*70%(국고보조율)
- (운영비): 90백만원(국비 63백만원, 지방비 27백만원)
 - * 국비 지원 산출내역 : 90백만원(30백만원*3개조합) × 70%(국고보조율)
 - ※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상적 운영 경비(예시)
 - 1) 기관운영비 : 시설관리비, 임차료 등
 - 2) 일반운영비 : 소모품비,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, 보험료(화재보험, 상해보험)
 - 3) 여비 : 국내출장여비 등
- (사업비) 180백만원(국비 126백만원, 지방비 54백만원)
 -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, 운영(홍보 포함) 사업비
 - * 국비 지원 산출내역: 180백만원(60백만원*×3개조합) × 70%(국고보조율)